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37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한준호 · 김문수 · 박용갑

이건태 • 복기왕 • 박균택

정준호 • 허성무 • 정태호

이용우 · 강유정 · 박상혁

이해민 · 김원이 · 김성회

김동아 · 조승래 의원

(17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고 조사 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 자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의무보고"를 "의무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결과"를 "결과(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다)"로 하 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상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철도사고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철도사고등 <u>의무보고</u>) ①	제61조(철도사고등 <u>의무보고 등</u>)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	②		
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u>결과</u>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	결과(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		
고하여야 한다.	<u>대책을 포함한다)</u>		
<u><신 설></u>			
	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		
	개하여야 한다.		